

고성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

(의안번호 제485호)

심사보고서

1998. 6.

의회운영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1998. 6. 10 이상근의원 외 5인
- 나. 회 부 일 자 : 1998. 6. 15
- 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1998. 6. 19 상임위원회 상정 · 의결

2. 제안이유

-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19조(의안의 제출·발의)와 관련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 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연서발의토록 되어 있으나 제출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고 완벽한 의안심사를 위하여 당해 회기에 처리할 의안은 본회의 개의 7일전으로 기한을 정하고자 하는데 있음.

3. 주요골자

-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의안의 제출·발의시 당해 의회에 제출기한을 본회의 개의 7일전으로 명시.

4. 검토의견

-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19조(의안의 제출·발의)와 관련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 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연서발의토록 되어 있음.
- 이와관련 경상남도의의회회의규칙에서는 본회의 개의 10일전까지 의안을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본 군의회회의규칙에서는 기간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 의안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와 완벽한 의안심사를 처리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한점 등을 고려
-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19조(의안제출·발의)시 제출, 발의기한을 개정안대로 본회의 개의 7일전으로 명시함이 옳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 : 없음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○ 1998. 6. 19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